

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30일	
신청인	성명(대표자)			생년월일	
	기관·단체의 소재지			(전화:)	
	기관·단체명				
조직 및 인원		※ 필요한 경우 별지사용 또는 조직도 등 관련 서류 첨부가 가능합니다.			
교육방법		※ 필요한 경우 별지사용 또는 관련 서류 첨부가 가능합니다.			
인력 현황	성명	소속 및 직위	교육관련 담당업무	연락처	비고
교육과 관련한 주요 실적		※ 필요한 경우 별지사용이 가능합니다.			

「항공안전법」 제135조제10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0조의3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해당 기관·단체의 조직도 및 인력 현황 2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계획서 가. 교육 내용 나.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 다. 교육기록 보존 계획 3.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20조의3제1항 각 호의 인력,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.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